



고용노동부

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

수신 관내 사업장 대표 귀하

(경유)

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적발 시 즉시 범죄인지 실시 안내

1. 귀사의 무재해를 기원합니다.
2.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는 반복되는 산업재해를 근절하기 위해 「안전한 일터 프로젝트」 추진과 동시에, **감독·점검 조치기준은 2025. 10. 1.부터 아래와 같이 변경할 예정**이오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보건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변경 전
(감독) 일반감독 시 일부 조항 선 시정 기회 부여, 미이행시 사법조치 (점검) 선 시정기회 부여, 미이행시 사법처리

⇒

변경 후
(감독) 특별감독과 동일하게 모든 위반사항에 대해 즉시 사법조치(10.1~) (점검) 선 시정기회 부여, 10일 이내 미이행 시 사법처리 및 감독으로 전환

끝.

부산지방고용노동청부산동부지청장



근로감독관

손미정

과장

전결 2025. 9. 15.

김명우

협조자

시행 산재예방지도과-5173

(2025. 9. 15.)

접수

우 46332

부산광역시 금정구 공단서로 12 (금사동 107-1 노동부 부산동부지청)

/ <http://moel.go.kr/busandongbu/>

전화번호 051-559-6696

팩스번호 051-529-7826

/ samu2020@korea.kr

/ 비공개(7)